

자동차 보험 가입과 사고처리(I)

자

동차가 널리 보급되면서 우리의 일상생활에 커다란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귀중한 인명과 재산의 손실도 막대하다. 사고 당사자인 개인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는 외국에 비하여 아직까지 월등히 높은 자동차 사고율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최근의 자동차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개인 또는 가정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자동차 사고 발생 건수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세계제일의 자동차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하에서 우리는 이미 자동차 사고 속에서 살고 있다하여도 지나치지 않으므로 상식적인 선에서 자동차 보험과 자동차 사고발생시 조치할 사항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알아보기자 한다.

우리나라 교통사고는 작년에 총 17만5천6백61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7천2백6명이 사망하고 22만2천7백1명이 부상당했는데 이는 하루에 평균 4백81건의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여 매일 20명이 사망하고, 6백10명이 부상당한 꼴인데 이것은 우리나라의 자동차 대수를 감안하여 볼 때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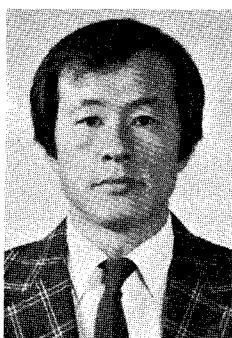
자동차 사고를 낸 운전자와 차주의 책임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사고를 낸 운전자는 민사 책임·행정상의 책임·형사 책임 등 3가지 책임을 지게 된다.

민사 책임은 민법 제 750조에 의거, 피해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민사상의 손해 배상 책임을 말하며 행정상의 책임은 도로 교통법 제 9장에 의거, 교통법규 위반 등에 따른 범칙금액 통고처분이나 면허정지, 취소 처분 등을 말한다. 형사 책임은 남에게 상해를 입힌데 대한 업무상 과실 치사상죄(형법 제 268조·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 3조)와 남의 재물을 손괴하였을 때 과실로 인한 건조물 기타 재물 손괴죄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다.

위의 3가지 책임중 보험에 가입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것은 민사 책임에 한한다. 형벌, 즉 응보적 책임에 해당하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의 책임은 보험으로 보호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 민사 책임에 대하여는 직접 가해 행위를 한



최종용

동부그룹 종합조정실 근무,
한국자동차보험 영업과장,
인사과장 역임

운전자만이 아니고 그 운전자가 타인에게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의 사용자 즉, 차주가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이를 민법 제 7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 배상책임'이라고 한다.

만약 불의의 자동차 사고가 일어나면 사고를 낸 차주나 운전자들은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놓이게 되어 몹시 당황하기 쉽지만 피해자가 생긴 경우에는 먼저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 응급치료를 받게 하고 가까운 경찰관서에 사고 사실을 신고 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치 사항은 법률에 의한 운전자의 의무 사항이므로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이러한 조치를 한 다음 바로 보험회사에 전화 등으로 차량 번호, 소유자, 사고 일시 및 장소, 사고 경위, 피해자의 인적 사항과 치료하는 병원 등을 즉시 알려줌으로써 보험회사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자기 차나 남의 차가 파손되어 정비공장에 들어간 경우에도 위와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보험회사는 이러한 사고 통지를 받게 되면 사고 현장이나 병원 또는 정비공장 등을 방문하여 사고 상황 및 피해정도를 확인한 후 사고에 대한 보상 안내와 앞으로의 처리 절차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된다.

이때 인사 사고를 낸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때에는 보험회사는 차주나 운전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 절충 및 소송(영업용 자동차는 합의, 소송 대행 특약에 가입한 경우)의 절차 등을 대행할 수가 있

다. 이 경우 보험회사가 하는 합의 대행은 민사상의 금전적 손해배상에 한하여 보험 약관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대행(代行)하는 것으로 가해자의 도의적 책임까지 대행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형사 책임 또는 행정상 책임에 관한 부분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므로 차주나 운전자는 피해자를 방문하고 위로 및 사과하는 등 도의적 책임을 별도로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케 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운전자는 경찰 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 공무원에게, 경찰 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에 교통사고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사고의 신고는 경찰관서 소재지에서는 3시간 이내, 기타 장소에서는 12시간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어기는 교통사고 신고 지연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즉시 신고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책임보험(責任保險)과 임의보험(任意保險)

자동차보험은 크게 보아서 책임보험과 임의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다. 책임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자동차를 가진 사람은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강제보험(強制保險)으로서 불의의 자동차사고가 발생할 경우 선의의 피해자에 대하여 최소한의 치료비 등을 보험회사가 책임배상하도록 법으로 규정한 보험이다. 따라서 자동차를 등록할 때에는 누구나 의

무적으로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약칭 책임보험)에 가입토록 하고 이를 어기면 별도의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를 소유한 모든 사람에게 과도한 보험료를 의무부과할 수는 없으므로 책임보험으로 보상되는 한도는 극히 미약하여 부상일 경우 최고 3백만 원, 사망시 5백만원, 후유장해시 최고 3백만원까지만 보상되므로 그 이상의 치료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험가입이 요구되는데 그것이 임의보험이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므로 업계나 학계 등 전문가들이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를 최고 천만원 이상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임의보험은 문자 그대로 자동차 소유자의 임의의 선택사항으로서 「자동차종합보험」, 「자가운전자종합보험」, 「운전자보험」 등이 있다. 이러한 임의보험은 책임보험에서 보상하는 한도액이 넘는 부분에 대하여 보상하는 것으로서 자동차종합보험과 자가운전자종합보험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흔히 일반종합보험이라 불리우는 자동차종합보험은 자동차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한 사고가 발생시 운전자를 한정하지 않는다는 점이 자가운전자종합보험과 다를 뿐 보상하는 내용은 공히 같다.

그러나 자가운전자종합보험(일명 오너보험)은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되는 피보험자와 부, 모, 배우자, 자녀를 제외한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에는 전혀 보상받지 못한다는 것이 다르다. 예컨대 자가운전자종합보험에 가입한 차를 동생에게 빌려 주었다가 사고가 났을 경

보험회사는 민사상의 금전적 손해배상에 한하여 약관 범위 내에서 대행하는 것으로 가해자의 도의적 책임까지 대행하는 것이 아니다.

형사, 행정상 책임은 물론 차주나 운전자는 피해자를 위로 및 사과하는 등 도의적 책임을 별도로 이행해야 할 것이다.

우에는 사고금액에 대한 모든 책임은 운전자와 차주에게 있을뿐 보험회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종합보험의 보험료보다는 훨씬 싸다는 장점이 있으나 이 보험의 개발취지 자체가 오너드라이버에 있다는 것을 알고 보험가입시 착각이 없어야겠다(특히 여려사들이 공동으로 차를 운전할 경우 우라든지 형제, 친지에게 빌려주는 경우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일반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최근 사고의 추세를 보면 자가운전자종합보험에 가입한 차량의 사고발생이 급격히 많아지고 있는데 이는 초보운전 등 운전미숙과 과속, 음주 등에서 오는 원인이라고 분석되고 있어 오너 드라이버들에게 크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자동차보험이 담보하는 내용을 살펴보자, 즉 사고가 발생하면 어떤 내용으로 보상하는가에 따라 대인배상, 대물배상, 차량손해배상, 자기손해배상으로 나누어 가입하게 된다. 물론 어떤 담보로 할 것인가는 계약자의 자유이나 우리나라처럼 교통사고가 많은 환경에서는 네가지 담보에 모두가입하는 것이 좋고 이 경우 각각 5%씩 할인받게 되므로 보험료부담에서도 유리하다.

대인배상이 보상하는 내용은 사망시의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 부상시의 치료관계비용, 구조, 응급처리비, 휴업손해와 후유장해시 위자료, 상실수익액 등이며 대물배상에 있어서는 상대차체에 대한 제반 수리비, 부품 교환, 인양비, 대차료, 휴차료 등이며 차량손해배상은 자기차량에 대한 교환비, 부품대, 수리비 등이다.

또한 자기손해배상은 가해자인 운전자의 사망, 부상, 후유장해에 대한 배상으로서 최고 천만원의 범위하에서 보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보상은 사고시 본인의 과실정도에 따라 보험금지급을 일부 공제하고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난폭운전을 하여서는 절대 안되겠다. 구체적인 보상사례에 대하여는 다음에 살펴보기로 하자.

자동차 보험의 가입

보험가입자가 보험 가입 신청을 하는 것을 청약이라 하며 이 청약은 보험회사에서 소정 양식의 청약서를 마련하여 보험 가입자가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청약서의 기재 사항은 보험법과 보험약관에서 말하는 '계약 전 알릴 의무'에 해당하는 사람이므로 반드시 사실 그대로를 빠짐없이 적어야 한다. 만약 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할 때에는 보험법과 보험 약관상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에 해당되어 보험가입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법률에 의한 강제 보험인 책임보험을 제외하고는 경우에 따라서 과거 사고를 많이 일으켰거나 사고를 낸 우려가 큰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서 보험가입 신청을 거부할 수가 있다.

사고 유무에 따라 40%까지 할인 또는 200%까지 할증

자동차 보험의 보험료는 대수의 법칙에 의거 운영 형태나 사고율이 비슷한 자동차끼리를 그룹으로 하여 과거 통계실적과 향후 물가 요인 등을 감안하여 결정된다.

보험료 조정(인상 또는 인하) 또는 결정후 그 보험료로 보험을 운영한 결과치로 나타난 사고 발생과 이에 의하여 지급된 보험금의 비율인 실적 손해율이 당초에 보험료를 책정할 때 예상한 예정 손해율을 훨씬 초과하거나 미달할 때에는 다시 적정한 수준으로 보험료를 인상 또는 인하한다.

자동차 보험료는 신규 가입자를 제외하고는 자가용의 경우 과거 사고 발생유무 및 사고 발생 건수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하거나 할증하여 적용한다. 영업용 차량의 경우에는 10대 이상인 업체에 대해서는 운수 업체별로 손해율 실적에 따라 보

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하여 적용한다.

보험에 가입된 차가 사고를 냈을 때는 보험료를 더 내고 사고가 없으면 보험료를 할인하여 주는 제도를 할인·할증 제도라 하는데 이러한 제도를 두는 취지는 사고를 많이 낸 보험 가입자와 사고를 내지 않는 보험 가입자간에 보험료 부담을 달리 함으로써 양자간의 형평을 기하려는데 있을 뿐 아니라 사고를 많이 낸 보험 가입자에게 경각심을 높임으로써 교통사고를 줄이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할인·할증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첫째 할인의 경우는 최고 4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고 할증의 경우는 최고 200%까지의 할증을 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1건의 사고를 내게 되면 다음번 보험 계약시에는 20%의 보험료를, 2건의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50%, 3건의 경우 100%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반면에 사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번 보험계약시 대인, 대물, 자손, 차량손해의 담보 종목별로 각각 5%의 보험료를 할인 받고 그 다음 보험기간에도 사고가 없는 경우에는 또 5%, 모두 10%의 보험료를 할인받게 된다. 따라서 6개월을 단위로 보험 계약을 맺는 경우 4년간 사고가 없게 되면 40%를 할인받아 60%의 보험료만 내게 된다.

이러한 보험료의 할인, 할증은 보험료전체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대인 사고인 경우에는 대인 배상에 해당하는 보험료만, 차량 사고인 경우에는 차량손해에 해당하는 보험료만 적용하게 된다.

음주 운전 사고 1건을 일반 사고 3건으로 인정

자기 자신의 주량을 지나치게 과신하거나 이 정도야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마음으로 술을 마신 후 운전하다 일어난 음주운전 사고는 작년에 4천7백54건이었다. 또한 그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2백58명, 부상자가 5천9백10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음주 운전을 단속하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금년 7월부터 도로교통법이 더 한층 강화되었다.

음주 운전자에 대한 이같은 행정처분의 강화에 따라 이제까지는 사고를 내지 않을 경우 최고 1백일까지의 면허 정지 처분만 가능했던 것이 앞으로는 사고를 내지 않은 경우라도 혈중 알콜 농도가 1mg 이상이면 운전 면허가 취소되고 0.05% 이상이면 50만원까지의 벌금, 0.36% 이상이면 구속 수사하도록 되어 있다.

자동차 보험에서는 호흡 19에 나타나는 알콜 농도가 0.25mg이상이거나 혈액 1mg에 0.5% 이상의 알콜 농도가 나타났을 때 음주 운전으로 인정한다. 음주 운전 기준을 초과한 상태에서 운전중 사고가 발생하면 다른 일반 사고 1건에 20%, 2건에 50%, 3건에 100%의 보험료가 할증되는 기준과는 달리 음주 운전 사고 1건을 일반 사고 3건으로 인정하여 100%까지 할증한다. 음주 운전 기준이하 일지라도 사고 발생시는 1건을 2건으로 취급하여 사고 발생 종목의 보험료에 50%를 할증하게 된다.

종전에는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해도 대인, 대물, 자손, 차량손해의 전담보에 대한 손해를 보상해 주었으나 '86년 9월8일 이후 발생하는 자손과 차량손해는 면책 사항으로 사고가 나더라도 보상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다.

또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서 정한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20km/h초과), 앞지르기 방법 및 금지 위반,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 무 위반 등의 8가지 항목을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켰을 때는 일반 사고의 2건으로 간주하여 50%를 할증한다.

이는 음주 운전이나 중대 과실 사고의 경우 대형 사고를 유발시킬 소지가 많고 운전자로서 필히 지켜야 할 중대법규를 위반한 악의적인 사고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종전에는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해도 대인, 대물, 자손, 차량손해의 전담보에 대한 손해를 보상해 주었으나 '86년 9월8일 이후 발생하는 자손과 차량손해는 면책 사항으로 사고가 나더라도 보상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다음호에 계속) **양재**